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장학지원팀

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근로시간

- 일, 주, 학기당(520시간) 최대근로가능시간 내에서 근로 가능

1일 최대	주당 최대(학기중)	주당 최대(방학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근로장학금

-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 시간에 근거하여 국가근로장학금을 산정함

교내 근로	교외 근로
9,860원	12,220원

* 온라인 출근부 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함으로 근로활동 전후로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해야함

- 30분 단위가 기준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월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45분일 경우, 40시간 30분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함(15분 절사)

2.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는 근로당일 작성
- 점심시간 필수 체크(1시간 이내 는 근로기관에서 수정 가능)
- 근로장학생 과실로 출근부 미입력, 수정은 출근부 정정사유서 제출
  - (위치기반 동의 시 매월 2장 까지, 미동의시 1장 까지 제출 가능)
  - 정정사유서 다음달 5일까지 제출(마감일 이후 반영 불가) → 다음달 중순까지 수정 처리
- 출근부정정사유서, 특별근로신청사유서, 근무포기사유서 → 장학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 점심시간 및 근무시간 이후 근로 필요시 → 학생이 특별근로 신청(이메일)
- 수업시간 내 근로 불가(일시적 휴강, 시간표 변경이 있더라도 허용 불가)

3. 부정근로 관련 사항 1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

*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1월 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1월 7일로 바꿔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1월 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P군은 입력한 출근부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12 12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중앙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C양은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한 대리근로에 해당된다.

*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장학재단 부정근로 처리

-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의심사례 발견 시 학교로 통보
  - 출입국 관리기록, 병무청 병무기록 조회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 ★ 해외 출입국일에 근로 금지, 출근부 등록 금지 ★
- 부정 수급자 발생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해당 장학금 환수 처리, 본교에도 불이익

우리대학 부정근로 처리

- 부정수급 해당부서 : 1년간 국가근로 장학생 배정 제외
- TA/RA 해당 교수 : 1년간 배정 불가
- 부정수급 학생 : 최대 2년간 국가근로 불가 및 부정수급에 대한 장학금 환수 조치

최근 부정근로 적발사례

선발학기	부정근로 유형	부정근로인원	부정근로내용	제재조치
2023 / 1 학기중	이해관계	대학생청소년교육 지원사업(대청교)	부모님 근로기관에서 근무	학생) 1년간 선발 제한 근로지) 1년간 모집중지
2023 / 1 하계방학	허위근로	국가TARA 3명 교내일반 1명 대청교 1명	해외출입국과 근로시간 겹침	학생) 1년간 선발 제한 근로지) 1년간 모집중지
2023 / 2 동계방학	허위근로	국가TARA 1명 학생지정TARA 1명 취업연계 1명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출근부 등록	학생) 1년간 선발 제한 근로지) 1년간 모집중지
2024 / 1 학기중	허위근로	국가TARA 1명 교외일반 1명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출근부 등록	학생) 1년간 선발 제한 근로지) 1년간 모집중지
	이해관계	대학생청소년교육 지원사업(대청교)	부모님 근로기관에서 근무	학생) 1년간 선발 제한 근로지) 1년간 모집중지

※ 상기사례 외 부정근로 의심사례나 제보사례가 다수 발생

4. 국가근로장학생 현장점검 실시

장학재단 현장점검 지적사항

- 국가근로장학생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와 함께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지에서 학생 혼자 근로
  - 근무 상황 점검으로 발견되는 경우 차회 국가근로 선발 제한
- 국가근로생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 부여 → 퇴근후 업무지시, 야근강요, 근로지 이탈
  - 각종 민원 발생 시 차회 국가근로 선발 제한

장학지원팀 현장점검 실시

- 근로기간 중 장학지원팀 불시 현장점검 실시
- 위치기반 미동의 학생이 많은 근로지 우선 점검 실시 대상
  - 학생의 출.퇴근 위치기반 동의는 부정근로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동의 바람
- 점검내용 : 근로학생 출근여부, 관리자 관리여부, 근로학생의 업무내용 확인 등

5. 국가근로장학생 금지 사항

이럴 땐 근로할 수 없어요!

중복참여 금지 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동시참여 불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학업시간 중복불가 ②

학업시간표 중복 불가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근로 불가

재학중이 아닌경우 ③

학적변동이 발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등

대학 재학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학적 변동 발생 시, 대학에 안내

자격해제 사유발생 ④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사유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가 적발된 경우,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

5. 이해관계 기관 근로금지

장학재단에서 다음연도에 이해관계 확인하므로 졸업하더라도 적발 시 반납해야 함

근로기관 및 근로지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요!

배정된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와 이해관계(가족관계)가 있다면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이해관계(가족)가 있는 경우도 포함

근로장학생은 매칭(배정)되거나 매칭(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인 경우 해당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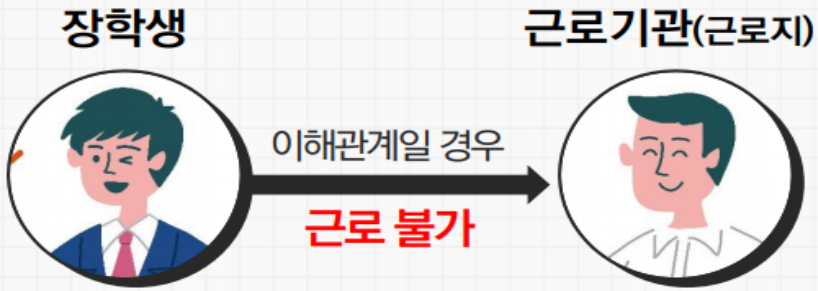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다른 근로지 또는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근로장학생 서약서 中

본인은 장학생이 본인 또는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장학생의 소속대학에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장학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